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세 분야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지방세법 관련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지방계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어린이·보행자 및 저수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 열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상대비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약물범죄 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4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제4호 중 “조정·승인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조정 및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4의3.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제12조제1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지방세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18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로,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재난관리정책과장·재난정보통신과장·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재난대응정책과장·재난대응훈련과장·자연재난대응과장·기후재난대응과장·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 및 재난자원관리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지진방재정책과장·지진방재관리과장”을 “각 과장”으로 한다.

제19조의2제5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감염병재난대응과장·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환경재난대응과장·수습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을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산업교통재난대응과장·감염병재난대응과장·가축질병재난대응과장·환경재난대응과장·수습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삭제한다.

15.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1,611”을 “1,622”로 하고, 일반직 계 “1,582”를 “1,59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9”를 “56”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5”를 “14”로,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2”를 “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을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5”를 “4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6”을 “57”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7”을 “169”로,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1”을 “33”으로,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9”를 “21”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99”를 “202”로, 행정주사보 “18”을 “19”로 하고, “사무운영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626”을 “1,637”로 하고, 일반직 계 “1,597”을 “1,60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0”을 “57”로,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5”를 “14”로,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2”를 “3”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을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5”를 “4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6”을 “57”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67”을 “169”로,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1”을 “33”으로,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9”를 “21”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99”를 “202”로, 행정주사보 “20”을 “21”로 하고, “사무운영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중 방송통신주사보 “16”을 “17”로, 행정서기보 “10”을 “12”로, 통신운영주사보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5의2 중 방송통신주사보 “16”을 “17”로, 행정서기보 “10”을 “12”로, 통신운영주사보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8의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5”를 각각 “78”로 하고, 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2”로,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5”를 “7”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456”을 “458”로 하고, 일반직 계 “447”을 “44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04”를 “407”로, 전문경력관 “2”를 “1”로 한다.

별표 12 제1호3)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1호4)부터 6)까지를 3)부터 5)까지로 한다.

별표 1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6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9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⑬ (생략) ⑭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연구</u> 6. ~ 26. (생략) ⑮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 · <u>조정 · 승인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u> <u><신 설></u> <u><신 설></u> 5. ~ 14. (생략) ⑯ ~ ⑳ (생략)	제11조(지방자치분권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 26. (현행과 같음) ⑮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조정 및 승인</u> <u>4의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지원</u> <u>4의3.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 및 개선</u> 5. ~ 14. (현행과 같음) ⑯ ~ ㉕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 ⑪ (생략) ⑫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

제19조(재난관리실) ① ~ ⑤ (생

제19조(재난관리실) ① ~ ⑤ (현

략)

⑥ 재난관리실에 재난관리정책과·지진방재정책과·지진방재관리과·재난정보통신과·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재난대응정책과·재난대응훈련과·자연재난대응과·기후재난대응과·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과 및 재난자원관리과를 두며, 재난관리정책과장·재난정보통신과장·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재난대응정책과장·재난대응훈련과장·자연재난대응과장·기후재난대응과장·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 및 재난자원관리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지진방재정책과장·지진방재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원·시설연구원·방재안전연구원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⑦ ~ ⑱ (생략)

제19조의2(재난협력실) ① ~ ④
(생략)

행과 같음)

⑥

각 과 장

⑦ ~ ⑱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재난협력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15. (생 략) ④ (생 략) ⑤ 노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u>정부세종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9. ~ 11. (생 략) ⑥ ~ ⑨ (생 략) 제56조(한시정원) ①·② (생 략) <u><신 설></u>	15. <u>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u>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7. (현행과 같음) <u><삭 제></u> 9. ~ 11.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6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안전부에 둔다.</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11</u>	<u>1,622</u>	+11
·	·	·	
·	·	·	
일반직 계	<u>1,582</u>	<u>1,593</u>	+11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59</u>	<u>56</u>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5</u>	<u>14</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 연구관 · 시설연구관 · 방 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 전문관	<u>2</u>	<u>3</u>	+1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학예 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 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 관	1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u>			

<u>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u>	<u><신 설></u>	<u>3</u>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45</u>	<u>46</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6</u>	<u>57</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 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7</u>	<u>169</u>	+2
·	·	·	
·	·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 는 전산사무관	<u>31</u>	<u>33</u>	+2
·	·	·	
·	·	·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u>19</u>	<u>21</u>	+2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	<u>199</u>	<u>202</u>	+3

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 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 사			
·	·	·	
·	·	·	
행정주사보	<u>18</u>	<u>19</u>	+1
·	·	·	
·	·	·	
<u>사무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26</u>	<u>1,637</u>	+11
·	·	·	
·	·	·	
일반직 계	<u>1,597</u>	<u>1,608</u>	+11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0</u>	<u>57</u>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5</u>	<u>14</u>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u>2</u>	<u>3</u>	+1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u>			

<u>방재안전연구관</u>	<u><신 설></u>	<u>3</u>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45</u>	<u>46</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6</u>	<u>57</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 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67</u>	<u>169</u>	+2
·	·	·	
·	·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 는 전산사무관	<u>31</u>	<u>33</u>	+2
·	·	·	
·	·	·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u>19</u>	<u>21</u>	+2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 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	<u>199</u>	<u>202</u>	+3

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 사	.	.	
.	.	.	
행정주사보	<u>20</u>	<u>21</u>	+1
.	.	.	
.	.	.	
<u>사무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16</u>	<u>17</u>	+1
•	•	•	
•	•	•	
행정서기보	<u>10</u>	<u>12</u>	+2
•	•	•	
•	•	•	
통신운영주사보	<u>2</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1</u>	-2
•	•	•	
•	•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송통신주사보	<u>16</u>	<u>17</u>	+1
·	·	·	
·	·	·	
행정서기보	<u>10</u>	<u>12</u>	+2
·	·	·	
·	·	·	
통신운영주사보	<u>2</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1</u>	-2
·	·	·	
·	·	·	

[별표 8의3]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5</u>	<u>78</u>	+3
일반직 계	<u>75</u>	<u>78</u>	+3
·	·	·	
·	·	·	
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 구관	<u>1</u>	<u>2</u>	+1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 구사	<u>5</u>	<u>7</u>	+2
·	·	·	
·	·	·	

[별표 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56</u>	<u>458</u>	+2
일반직 계	<u>447</u>	<u>449</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04</u>	<u>407</u>	+3
·	·	·	
전문경력관	<u>2</u>	<u>1</u>	-1
·	·	·	